

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(제4조제1항 본문 관련)

1.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: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·제24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0조·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학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또는 실습기간
2.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
 - 가.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정: 1개월 ~ 6개월
 - 나. 직업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과정: 1주 ~ 3개월
 - 다. 직업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과정: 1주 ~ 2개월
 - 라. 직업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정: 1개월 미만
3.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
 - 가.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정: 1개월 ~ 6개월
 - 나.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미만인 과정: 1주 ~ 3개월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기간은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